

구매 약관

- 1. 수락:** 본 주문서 또는 계약서("주문서")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서면 조달 계약에 따라 발행되지 않는 한, 본 주문서, 조항 및 본 주문서에 첨부된 모든 문서는 본 문서에 따라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총칭하여 "상품")에 관하여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유일하고 배타적인 이해를 구성한다. 매도자가 본 주문서를 서면 수락하거나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 또는 서비스에 착수할 경우 매도자가 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수자는 매도자가 제안하는 모든 추가적인 또는 다른 조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며, 매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항은 본 주문서의 일부가 아니다. 본 주문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적절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서명할 경우에만 수정될 수 있다.
- 2. 가격 및 세금:** 본 주문서에 명시된 매도자 가격은 상품에 적용되는 유일한 가격이다. 본 주문서에 따른 매도자 상품 가격은 (a) 관련 정부 규정에 따라 매도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b)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유사한 수량으로 구매하는 다른 고객에게 매도자가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가격은 D.D.P.(Delivered Duty Paid) (매수자의 시설) (인코텀즈 2010)로 한다. 여기에는 모든 화물 비용 및 현재와 향후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지방 세금 및 관세가 포함된다. 매수자가 그러한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하기로 달리 동의할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면제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매도자가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별도로 청구한다.
- 3. 포장 및 인도:** 매도자는 모든 상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포장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화물 운송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며, 일반 운송업자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매도자는 매수자의 라벨 부착 및 문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수자의 주문서 번호, 부품 번호, 수량, 부호를 모든 송장, 포장, 선하 증권에 분명히 표기하는 것이 포함된다. 상품에는 선적 서류 또는 포장 명세서를 동봉해야 한다. 포장 명세서가 동봉되지 않은 화물은 매수자의 계수 또는 무게 측정에 따라 결정된다. 선하 증권 또는 화물 수령증은 선적 일자에 매수자에게 전달한다. 매도자가 매수자의 경로 지시 및 인도 일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초과 운송 또는 기타 운임 및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본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도자는 상품을 D.D.P. (매수자의 시설) (인코텀즈 2010)로 인도하며, 상품의 소유권은 매수자가 상품을 수령할 때 이전된다. 매도자는 선적을 예약할 수 없다.
- 4. 인도 일정:** 매도자는 매수자의 정규 영업 시간에 주문서 또는 매수자의 인도 일정에 명시된 수량 및 시간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본 주문서에서 시간 엄수는 필수 조건이다. 매수자는

주문서 또는 매수자의 인도 일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이 인도된 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러한 초과 인도분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자가 부담하며 매도자의 비용으로 반송될 수 있다. 매수자는 예정된 선적의 운임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매도자가 본 주문서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품 주문서에 수량 및/또는 인도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가 향후 지시하는 수량 및 시간에 따라 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 5. 변경:** 매수자는 언제든지 상품의 도면 및 사양에 변경을 지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는 본 주문서에 해당되는 작업 범위를 달리 변경할 수 있다. 매도자는 그러한 변경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변경으로 발생하는 인도 가격이나 시간의 차이는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조정한다.
- 6. 조사:** 매수자는 제조할 때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조사할 수 있다. 매수자가 매도자의 공장을 조사하고 승인하더라도, 매수자는 향후 조사에서 발견된 불량품을 거절할 수 있다.
- 7. 보증:** 매도자는 상품이 사양, 도면, 견본 또는 매수자에게 제공하거나 매수자가 동의한 기타 설명에 부합하고, 적합한 자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결함이 없으며,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이며, 석면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재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또한 매도자는 매수자가 상품에 대해 가진 의도를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상품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고, 정비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제조된 상품이 어떠한 선취권이나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보증한다. 매도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적절한 소유권을 이전함을 보증한다. 매도자가 설계를 책임질 경우, 매도자는 그러한 상품의 설계에 결함이 없고, 매수자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며,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충분함을 보증한다. 매도자가 제공한 설계를 매수자가 승인하더라도 매도자는 본 보증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상품의 조사, 시험 또는 사용은 본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수자가 요청할 경우, 매도자는 사양 규정 준수 인증서 또는 분석성적서를 제공한다. 매도자의 보증은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주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매수자가 거절한 상품은 매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속히 수리, 교정 또는 대체해야 한다. 매수자가 거절한 상품의 반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또한 매도자는 운송 중 상품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본 보증은 매수자, 매수자의 승계자, 양수인, 고객 및 제품 사용자에게까지 적용되며, 배타적이지 않다.

8. **불가항력:** 한 당사자가 정부 조치나 규정, 화재, 파업, 사고, 천재지변 또는 해당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한 의무는 유예된다. 단,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건을 피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수자는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지연된 주문서를 불이익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 주문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즉시 대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다. 이때 것처럼 구매한 상품은 매수자의 의무 구매 수량에 포함된다.
9. **기밀 유지 및 소유권:** 매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품, 본 주문서에 따라 구매한 서비스 및 모든 기타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관련 권리는 매수자가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여기에는 모든 자재, 스케치, 레이아웃, 툴링, 주형, 금형, 사진 원판, 사진, 설계, 블루프린트, 프로그램, 코드 또는 관련 사양이 포함된다.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계획, 도면, 설계 및 사양은 여전히 매수자의 자산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그러한 자료에서 파생된 모든 정보나 기타 소통으로 얻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간주하며, 매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10. **위반으로 인한 취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 대한 책임 없이 본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a) 매도자가 본 주문서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b) 매도자가 매수자가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하거나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c) 매도자의 과실로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이행 또는 상품 인도가 어려워지고, 매수자로부터 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수령한 때부터 10일(또는 상황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불이행을 고치지 못할 경우.
11. **종료:**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이유 없이 본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것처럼 종료될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다음의 금액을 중복 없이 지불해야 한다. (a) 본 주문서에 따라 완료 및 인도되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모든 상품 대금, (b) 진행 중인 작업, 본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매도자가 구매한 상품 및 원자재의 원가. 단, 이러한 비용은 본 주문서의 종료된 부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배분 또는 할당이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이내여야 하고, 마감된 상품의 총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 또는 파괴된 상품이나 자재와 관련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상품 및 자재는 합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다(매수자의 서면 허가 필요). 매수자는 본 항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주문서의 종료와 관련된 그 밖의 비용 또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든 손상, 불이익,

영업이나 예상 수익의 손실, 간접비배부족액, 일반관리비가 포함된다. 매도자는 종료 발효일로부터 60일 내에 매수인에게 포괄적 종료 청구를 충분한 근거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고, 매수자나 매수자의 대리인이 모든 장부, 기록, 시설, 작업, 자재, 재고 및 그러한 종료 청구와 관련된 기타 제품을 감사 및 검사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 12. 침해:** 매도자는 본 문서에 따른 형식, 형태 및 상태로 인도되는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에 있어 해당 상품 또는 상품 제조 방법에 적용되는 미국 또는 외국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또한 매도자는 매수자, 매수자의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고객 및 양수인을 모든 손실, 청구, 피해, 책임,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및 그러한 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로 발생한 모든 소송 사유로부터 면책하고 보호하며 배상하는 데 동의한다. 매도자는 상품을 다른 자재와 함께 사용하거나 특허받은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 13. 면책: 보험:** 매도자는 매수자, 매수자의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고객 및 양수인을 모든 손실, 청구, 피해, 부상(사망 포함), 책임,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및 매도자가 본 주문서의 조항을 위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매도자, 매도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의 행동이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사유 등으로부터 면책하고 배상한다. 매도자는 매수자를 전술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또는 산업의무 법에 따른 모든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도와 적절한 종류의 공공책임보험, 대물배상 및 고용주책임보험 및 보상보험을 유지한다. 요청 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러한 보험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14. 지불 기한:** 순 60 일 또는 2% 할인이 포함된 순 10 일로 한다. 본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지불 기한의 선택은 전적으로 매수자의 선택 사항이다. 지불 기한 및 할인 제공 기한은 매수자의 미지급금 부서에서 정확한 청구서와 모든 필요한 근거 서류를 수령한 날짜에 시작한다. 또한, 그러한 정확한 청구서 및 근거 서류는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된 후에만 발행할 수 있으며, AccountsPayable.GOC@grace.com 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법에서 요구할 경우, 매도자는 청구서의 인쇄본도 매수자의 지정된 주소로 보내야 한다. 모든 청구서는 본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5. 상계:** 매수자는 언제든지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매수자 또는 매수자의 계열사가 매도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 금액의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

- 16. 법률 준수:** 매도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모든 적용되는 연방, 주, 지방 및 외국의 법률을 준수하여 제조, 생산 및 판매되는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인증한다. 그러한 법에는 부정부패 방지법, 상품이 제조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과 (매도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기타 법 및 그러한 법의 증진을 위해 공포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된다. 매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도자가 본 주문서를 이행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허가, 라이선스 및 기타 형태의 서류를 보유 또는 획득하고, 모든 정부 수수료를 지불하며,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기타 법률, 법령, 규칙,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매도자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그러한 허가, 라이선스, 기타 형태의 서류 및 매도자가 본 계약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자는 자신의 허가 또는 라이선스를 상실하거나 적용되는 법률, 법령,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직업적 기회를 주는 것은 매수자의 정책이다. 매수자는 자격 있는 여성, 소외된 소수 민족, 베트남전 참전 용사, 장애가 있는 참전 용사, 그 밖의 장애인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서면 적극적 차별 수정 정책(Affirmative Action Plan)을 유지한다. 매도자는 다음에 나오는 미국 규정 조항의 대상이 될 경우 통지를 받는다. 4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연방규정집) § 60-300.5(a); 41 CFR § 60-741.5(a); 41 CFR § 60-1.4(a); 및 (c) 41 CFR § 60-1.7(a). 매도자 및 각 판매업체/하도급업체는 41 CFR 60.741.5(a) 및 41 CFR 60-3005(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자격 있는 장애인 또는 자격 있는 보호받는 참전 용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적용되는 1차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자격 있는 장애인 및 자격 있는 보호받는 참전 용사를 고용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고용을 개선하도록 적극적 차별 수정을 요구한다. 매도자가 매수자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도자는 안전, 보건, 개인 및 직업적 행실과 관련된 현장 규칙 및 모든 매수자의 요청,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17. 권리 포기:** 매수자가 본 주문서의 조항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자는 언제든지 그러한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
- 18. 양도:** 매도자는 매수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주문서 또는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미지불 금액을 양도할 수 없다. 본 주문서는 제3자에게 어떠한 계약에 따른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 19. 준거법:** 본 주문서는 법률의 충돌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척한다.
- 20. 가분성:** 전체 계약. 본 주문서의 특정 조항이 가진 무효성, 불법성 및 집행불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이 가진 유효성, 합법성 또는 집행가능성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주문서 및 본 주문서에 분명히 참조된 첨부, 별첨 또는 부록은 본 주문서에 포함된 사안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모든 이전의 계약을 대체한다.